#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3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이철규·김기현·구자근

박충권 • 박상웅 • 김선교

유상범 · 김도읍 · 서일준

신성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 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

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전사업자는 다른 발전사업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력계통 연계가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0조제5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 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제101조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본인 전기설비의 이용대가 또는 조건을 부당하게 요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발전사업자는 다른 발전사업
	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의 전기설
	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송
	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력계통 연계가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기
	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	제21조(금지행위) ①
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7. 제20조제5항에 따라 발전사
	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u>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u>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생략)

-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倂科)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21조제1항</u>에 따른 금지행 위를 한 자

3. ~ 7. (생략)

-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 5. (생 략) <신 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
<del></del>
9 7 (처체되 가O)
3. ~ 7. (현행과 같음)
제102조(벌칙) ①
<u>.</u>
1. ~ 5. (생략)
6. 제21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

- 6. 제21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 여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본인 전기설비의 이용대가 또는 조 건을 부당하게 요구한 자
- ② (현행과 같음)